

의안번호	2214943
의 퇴 인	허영의원
회 답 일	2026.1.29.
추계번호	25D6737

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운영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8억 4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81억 7,600만원(연평균 16억 3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	1,846	1,883	1,921	1,959	—	7,608	1,522
조사보고서 작성	—	—	—	249	318	568	114
합 계	1,846	1,883	1,921	2,208	318	8,176	1,635

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)	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·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둔 -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함	의무규정
2	안 제10조(진상규명 조사)	진상규명위원회는 의결로 진상규명 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조사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함(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)	의무규정
3	안 제13조(진상규명 조사결과 보고)	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완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를 작성·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16조(보상금)	국가는 남북귀환어부의 남북기간, 형사절차 중 구금기간, 그 밖에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·정신적·재산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함	의무규정

5	안 제17조(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)	국가는 피해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과 생활보조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26조(트라우마 치유사업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,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27조(기념사업 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귀환어부인권침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념 행사 실시,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28조(관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조(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)	○	
2	안 제10조(진상규명조사)	○	
3	안 제13조(진상규명조사결과 보고)	○	
4	안 제16조(보상금)	×	-현 시점에서 보상금, 의료지원금,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피해자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-제2기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총 1,288명의 남북귀환어부에 대하여 진실규명한 바 있으나, 1987년 국무조정실 남북전력기획단의 「연도별 해상납북 및 송환통계」에 따르면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된 선원은 모두 3,651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제정안 시행에 따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의 규모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함 ¹⁾ -또한,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남북귀환어부의 납북기간, 구금기간, 그 밖에 공권력 행사로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, 피해 유형·기간별로 지급되는 보상금이 상이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보상금등의 추계가 곤란함
5	안 제17조(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)	×	

6	안 제26조(트라우마 치유사업)	—	미대상: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사업은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이용하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7	안 제27조(기념사업 등)	×	추모사업, 연구·교육 등 관련 사업의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 여부 등을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가 곤란
8	안 제28조(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)	×	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업 규모 및 지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(이하 “진상규명위원회”라 함) 운영비는 ‘여수·순천 10·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’(이하 “여수·순천 10·19사건위원회”라 함)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참고하여 추정하되 제정안의 진상규명위원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은 제외함
 - 안 제10조에서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조사기간이 1회 연장된다고 가정하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은 4년으로 가정
- 안 제13조에 따른 진상규명 조사보고서(이하 “조사보고서”라 함) 작성을 위한 재정소요는 여수·순천 10·19사건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운영비용(전문임기제 3인 추가 채용)과 발간비용을 준용하고, 기획단은 존속기간 종료일 1년 전부터 활동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안 제13조에서 진상규명조사와 자료 수집·분석이 완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활동 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1) 제2기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대상자 수 및 1987년 「연도별 해상납북 및 송환통계」에 따른 납북인원 통계는 「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」(2025.11.)를 참고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

-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운영비(사무국 운영비 포함)는 여수·순천 10·19사건위원회의 예산을 준용함
 -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진상규명위원회는 2027~2030년까지 4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가정
- 여수·순천 10·19사건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은 48억 400만원이며, 제정안의 진상규명위원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, 연구용역 등의 사업예산을 제외하면 17억 7,600만원으로 해당 예산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함

[표 2] 여수·순천 10·19사건위원회 2025년 예산 내역

(단위: 백만원)

내용	예산액	제정안의 진상규명위원회 관련 사업 여부
위원회 및 지원단 운영 전문임기제 인건비	362	○
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전문임기제 인건비	226	×
상용임금(기간제근로자)	124	○
여순사건위원회 회의 운영	227	○
위원회 운영 경비	1,062	○
손실보상금(의료지원금 등)	136	×
진상보고서 발간	170	×
여순사건 관련 연구용역 추진	250	×
실무지원회 지원(지자체 보조)	2,246	×
계	4,804	1,77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 결과, 진상규명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8억 4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76억 8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	1,846	1,883	1,921	1,959	—	7,60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조사보고서 작성

-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정소요는 여수·순천 10·19사건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운영비용(전문임기제 3인 추가 채용)을 준용하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일 1년 전인 2030년부터 1년 6개월간 활동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조사보고서 작성비용은 여수·순천 10·19사건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비용(170백만원)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
- 추계 결과, 안 제13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30년 2억 4,900만원, 2031년 3억 1,800만원 등 총 5억 6,8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조사보고서 작성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조사보고서 작성	기획단 운영	-	-	-	249	127	376
	보고서 발간	-	-	-	-	191	191
	계	-	-	-	249	318	568

주: 2031년 기획단 운영비는 6개월분만 반영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8억 4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81억 7,6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5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	1,846	1,883	1,921	1,959	-	7,608
조사보고서 작성	-	-	-	249	318	568
합 계	1,846	1,883	1,921	2,208	318	8,17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